

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-37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09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
-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의 교통안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- 나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다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(안 제6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교통안전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동두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통, 도로 및 도시 관련업무 담당과장
2. 시의원
3. 동두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
4.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·서기 각 1명을 둔다.
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이며,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·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교통행정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박상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담당 박성환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강정호(860-2432)